

경상북도체육회 훈련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6. 4. 1

경상북도 승인 2016. 4.27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도체육회 전용훈련장 확보의 일환으로, 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도대표선수단 훈련관리, 우수선수 발굴·육성, 경기력과 지도력의 향상, 스포츠 과학화, 스포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소재) 본 센터는 경상북도체육회 훈련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하며, 소재지는 문경국군체육부대 종합운동장내에 둔다.

제3조(사업) 본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도대표선수단의 전지훈련 제공 등에 관한 사업
2. 우수선수 발굴·육성을 위한 사업
3. 엘리트선수의 스포츠과학화 및 스포츠 발전에 관한 사업
4.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
5. 국·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류에 관한 사업
6. 기타 센터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업

제 2 장 조직 및 운영

제4조(구성) 본 센터에는 다음의 직원을 두어 관리·운영 한다.

1. 센터장 1명
2. 자문위원 약간 명(무보수 명예직)
3. 직원 1~2명

제5조(임명) 본 센터의 직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 한다.

1. 센터장 및 직원은 사무처 직원중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로 임명 한다.
2. 자문위원은 스포츠과학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임명한다.

제6조(전보제한) 본 센터 직원의 전보제한은 1년으로 하되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직무) 센터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,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.
2. 센터장은 주간 및 월간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본부(도체육회 사무처)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.
3. 자문위원은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고, 센터의 발전에 필요한 조언을 한다.

제8조(훈련참가팀 결정 및 지원절차) 센터의 훈련참가팀 결정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.

1. 경기단체는 각급팀의 훈련일정을 총괄하여 반기별 신청하며, 훈련 종료후 전지 훈련 보고서를 제출한다.
2. 훈련참가팀 결정 및 예산지원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·결정으로 지원한다.
3. 본 회 지원계획외 추가(일정)사용되는 시설의 비용은 해당 경기 단체·팀에서 부담한다.

제9조(체제비) 현장근무 체제비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.

1. 현장 체제비 : 월 70만원 이내
2. 주택 보조비 : 월 50만원 이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